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조례 5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쪽수
2016-65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6-66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2016-67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11
2016-68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69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31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공포(‘16.1.19 공포, 9.1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법명 변경함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위원 구성 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확인하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된 법령위반 사항을 바로 잡음(안 제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구성한다.

### 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확인하는 조항 삭제(정비)함

- 위원회 기능(법 제25조), 구성(시행령 제74조), 위원의 해촉(시행령 제73조)

### 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간사, 실비보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제7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9. 23. ~ 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동산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법인격을 정함(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다.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라. 운영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바. 공무원 파견 및 겸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할 수 있음.

### 사. 감사·보고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감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15,55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없음
-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9. 19. ~ 10.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거창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7.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8.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및 법정 운영 경비 및 축제행사 경비 보조
- 관련 조문: 안 제4조(운영재원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3400	2,850	2,850	2,850	2,850	14,800	
세출	국비			300	300	600	
	도비			200	200	400	
	군비	3,550	3,000	3,000	2,500	2,500	14,550
	소계(a)	3,550	3,000	3,000	3,000	3,000	15,550
세입	소계(b)	150	150	150	150	150	750

### 3. 관련 의견

- 높아진 지역 문화수준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의 전문화, 효율화
-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절감을 도모코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출연금: 50백만원
- 축제 등 행사 보조: 1,900백만원
- 법정운영보조: 600백만원
- 경상사업 보조: 500백만원
- 자본보조: 50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신 판 성**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다. 이차보전 등 지원 및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주점업, 사차·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라. 이차보전 등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마. 착한가게 특례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등

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사.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이차보전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원 절차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아.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았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하였을 때, 중복 지원 받았을 경우, 의무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등

자.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약 3억 2017년도 예산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9. 20. ~ 10.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 ③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차·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착한 가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2. 쓰레기봉투, 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 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제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합계
총 비용(a - b)		3	3	3	3	3	
세출	이차보전 금	3	3	3	3	3	
	소계(a)	3	3	3	3	3	
세입							
	소계(b)						

### 3. 관련 의견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금융권 이자: 3.5퍼센트
- 이차보전금: 2.5퍼센트 / 2.5억
- 보증수수료: 50퍼센트 / 0.5억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정 창 석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분납방법, 반환기준, 변상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내용 변경함(안 제4조)

- 현행)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

개정) 5퍼센트 이상 증가 ⇒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

### 나. 분할납부 대상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앴(안 제5조)

- 현행) 채취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가능

개정) 채취기간 6개월 이상 +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 분납

### 다. 반환기준 명시하여 수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안 제7조)

-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 라.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변상금 부과기준 신설함(안 제10조)

- 부당이득금 ⇒ 변상금

- 변상금: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마. 감면기준 추가함(안 별표 2)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50퍼센트 감면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9. 14. ~ 10. 0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중 “의하여 감면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하천 공유수면”을 “소하천”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② 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을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으로 “6월”을 “6개월”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를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이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토석, 사력”을 “토석·모래·자갈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을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중 “별표 4에 의하되”를 “별표 3에 따르되”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변상금)**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1조(목적)	-----	----- -----에 따라----- ----- ----- -----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p>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다.</p>	<삭 제>		
<p>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로 한다.</p>	<삭 제>		
<p>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삭 제>		
<p>⑤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삭 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u>의하여 감면한다.</u>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 ----- <u>따른다.</u>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u>소하천 공유수면</u> 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u>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u>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u>소하천</u> ----- ----- <u>제2조에 따라</u> ----- ----- ----- <u>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lt;신 설&gt;</u>	② <u>변상금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u>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u>당해 연도 3월</u> 이내에 징수한다. ② <u>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u>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 ----- <u>해당</u> ----- <u>3개월</u> ----- ② <u>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u> ----- ----- <u>6개월</u> ----- <u>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③ <u>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u>	<u>&lt;삭 제&gt;</u>

현행	개정안
<p>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u>의한다</u>.</p>	<p>제6조(징수) ① ----- -----<u>그 밖의</u>----- -----<u>따라</u>-----</p> <p>② ----- ----- <u>따른다</u>.</p>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p>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u>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u>토석, 사력</u>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u>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u>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u>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u>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u>.</p>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p>① -----<u>등이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u>----- ----- -----<u>토석 · 모래 · 자갈 등</u>----- ----- <u>이를</u>-----</p> <p>② <u>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u>----- -----<u>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기준은 <u>별표 4에 의하되</u>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p>	<p>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 ----- <u>별표 3에 따르되</u>----- -----</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0조(변상금)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 -----.</p>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b>토지 가격의 100분의 1</b></p> <p>나. 식물이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95. 1. 5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b>모래, 자갈 등을</b>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p>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ath>m^3/sec</math>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p>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p> <p>○ <math>0.05m^3-0.5m^3/sec</math> 까지 연액 10,000원</p> <p>○ <math>0.5m^3/sec</math> 증가 시 마다 10,000원 가산</p>

구 분	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	○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4분의 1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담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m <sup>3</sup>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등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소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11.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8조 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000분의 1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점용료의 1000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받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허가	없음





#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거창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수출품 수출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해외통상자문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기능: 군이 추진하는 해외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 상공인, 국제교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2명 이내 위촉
-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라.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마.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전문단지, 조직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바.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생산관리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사.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33,000천원 ‘17년도 예산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9. 1. ~ 9.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물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2. 국제교류·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
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
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5.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
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
3. 해외 판촉행사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
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수출품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률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